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(단위: 만원)
가. 법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55조제2항제1호	500
나.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5조제3항	200
다.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	법 제55조제4항제1호	100
라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5조제2항제1호의2	500
마. 법 제18조의5제2항을 위	법 제55조제2항제2호	500

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	
바. 법 제18조의6제2항을 위 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 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 우	법 제55조제2항제3호	500
사. 법 제18조의6제3항을 위 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 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 한 경우	법 제55조제2항제4호	500
아. 법 제18조의13제2항을 위 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 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5조제1항제1호	500
자. 법 제18조의13제3항을 위 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경우	법 제55조제1항제1호	500
차.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5조제3항	200
카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5조제3항	100
타. 법 제30조제6항을 위반하 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경우	법 제55조제2항제6호	200
파.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 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 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·조사 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	법 제55조제1항제2호	500
하.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 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5조제3항	100
거.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55조제4항제2호	100
너.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55조제4항제3호	100

더.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55조제4항제4호	100
--	--------------	-----